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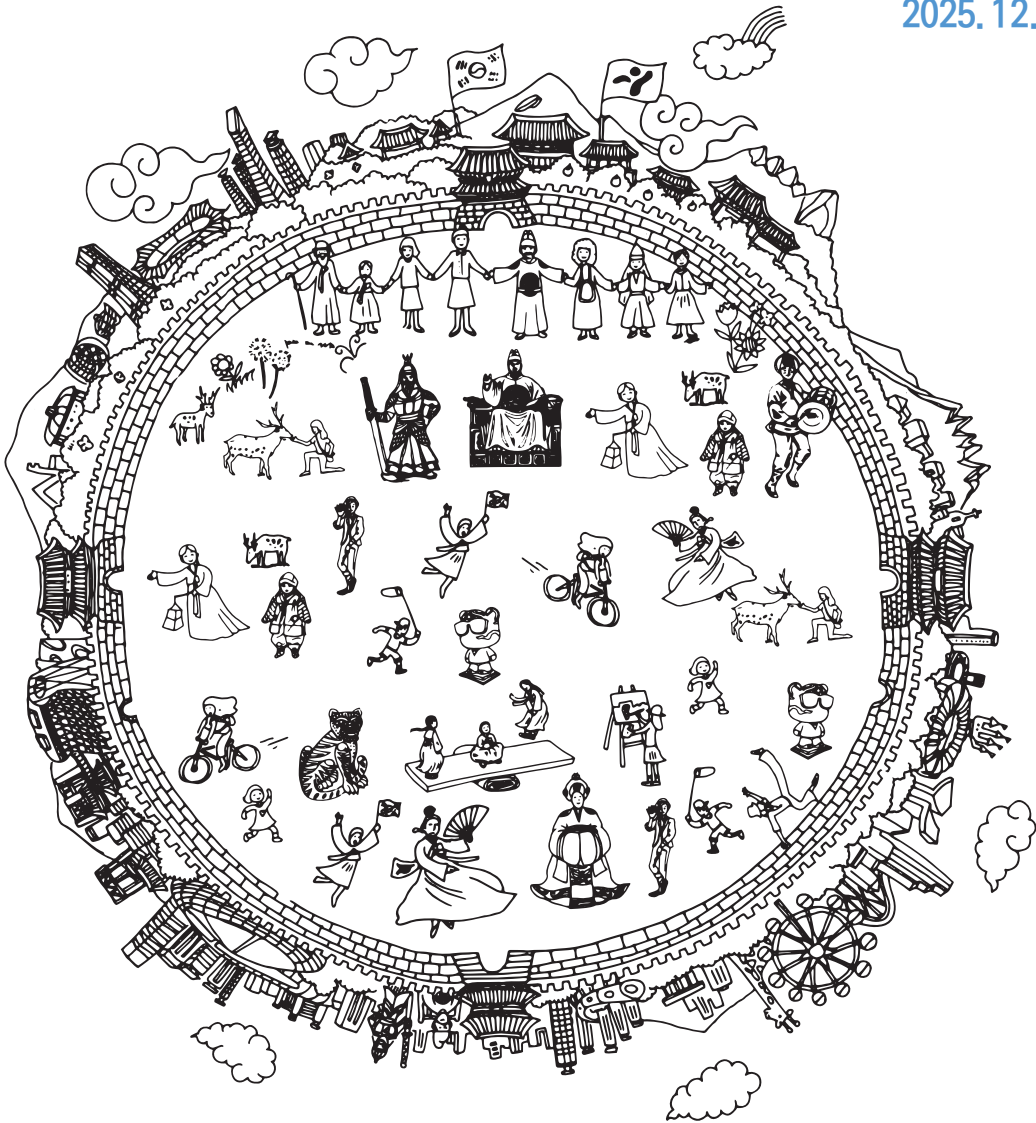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13호
2025. 12. 19.(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3616호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616호****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등 62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우천시 규칙 내 어려운 용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명칭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768-8823
- (2) E-mail: leesb200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9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KOLAS 공인시험기관” 이라 함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제9호에 규정된 「한국 인정기구 운용요령」 제2조제2호나목의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3의2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계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통계문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현장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8조(「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규칙”을 “규칙”으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외빈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2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재관 “이라 함은”을 “주재관 “이란”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공무원차량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조례’”로, “‘광장’”를 “‘광장’”으로, “‘신고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무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리버버스” 를 “한강버스” 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을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 를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사목”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2호” 를 “제5조제13호” 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 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제1항” 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 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을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63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〇〇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울특별시00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임”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〇〇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운동장(421㎡)
		1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운동장(3,456㎡)
강의실(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공통 (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 당	1시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25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30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300명)
	1시간	10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지 2]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성 명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제 1 지망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일반전화)	제 2 지망
	전자우편		우선선발
최 종 학 력			가점대상
자기 소개서			
자기소개 (가치관 및 신념을 중심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지원한 이유(지원동기)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주민등록 현황, 취업확인 등의 자료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의 교육훈련생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별지 3]

[별지 제2호서식]

기숙사 이용 신청 및 서약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 여)	
	훈련학과		학 번		
	주 소				
	보 호 자		보호자와 관계		
	거주형태	월세, 전세, 자가, ()		통학소요시간	
신 청 사 유		1. 지체장애인 2. 저소득 가정 3. 교통불편 4. 기타()			
상기 본인은 기숙사생으로서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교육훈련에 매진함은 물론, 제반 준칙을 성실히 따를 것과 교육훈련생 상호간의 예절을 지키고, 교육훈련생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귀하					
상담자 의견 : 상담인 (서명 또는 인)					

[별지 4]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용시설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 000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년	월 월	일 일	시부터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기 타				

위와 같이 귀 기술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귀하

[별지 5]

[별지 제4호서식]

차 상 위 계 층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동장 귀 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센터장 인	

※ 기타 법규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

[별지 6]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 학과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 수집 ·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실적 · 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 ~ 3.의 내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3조(정의) ----- ----- 뜻은 ----- ----.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u>뜻</u> 은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3조(정의) ----- ----- 뜻은 ----- ----. 1.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뜻은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9.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3조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3조(정의) ----- ----- 뜻은 ----- ----. 1.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15. ~ 18. (생략)	15. ~ 18. (현행과 같음)
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9. ----- ----- ----- -----

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
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
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
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
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21. ~ 40. (생 략)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생 략)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
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
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를 정
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
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

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
라 함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제9호에 규
정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
령」 제2조제2호나목의 KOL
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21. ~ 40.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
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
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
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
시킬 수 있다.

1. ~ 10. (생 략)

③ ~ ⑥ (생 략)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

1.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5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국민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 10.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6. (현행과 같음) 7. -----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8호----- -----. 8. ~ 10.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6조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통계의 보급 및 관리) ① (생략) ② 조사·작성된 통계표 등의 통계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작성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통계의 보급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계문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7조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현장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8조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 · 관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9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0조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1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2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3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4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1.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5조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준공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도급신청기관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준공검사) ②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7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8조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0조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u>처리규칙</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u>규칙</u> ----- ----- <u>뜻</u> 은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2조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외빈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제2조(정의) ----- ----이란 ----- ----- ----- -----. 1.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3조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u>정하는</u>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u>사용하는</u> -----.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 ----- --.
제3조(월액여비) <u>조례 제2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3항--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5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6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5조(예수 및 용자금)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기간 및 용자금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예수 및 용자금)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7조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재관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관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 치한 서울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u>자매도시</u> , 주요도시 등 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주재관 “이란 ----- ----- ----- ----- ----- <u>친선도시</u> ----- ----- -----.
제13조(임차료) 시장은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임차료는 <u>외교통상부</u> 장관 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 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의하여 산 정, 지급한다.	제13조(임차료) ----- ----- -----. ----- <u>외교부</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8조(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현행	개정안
제11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 ② (생략)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9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현행	개정안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0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5조(보조금 지급) ①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1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지급) ①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2조(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 ----- -----.
제7조(예방교육) ① (생략)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1.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
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
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
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
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성폭
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
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직
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

----- 「서울
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3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 등) ①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3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4조(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자금 대출) ①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4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현행	개정안
제8조(중복감사 지양) 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5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생략)	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의 <u>환경부장관</u> 고시에 따른다.	②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 ③ (생략)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 -----.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④ (생략)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⑤ ----- -----

항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6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 ----- -----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생략) ② 공무원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u>여성가족부장관</u>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3. ----- ----- --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8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사용신고) 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 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2조(사용신고) ①----- ----- ----- “조례”----- ----- -- “광장”----- ----- “신고자”----- ----- ----- ----- -----.
② 제1항에 따라 광장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 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주무부서”----- ----- “주무부서”-----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9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현행	개정안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u>	5.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시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 ----- ----- ----- ----- -----.
1. 「 <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1. 「 <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 -----

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
정금융거래정보

2. (생 략)

② (생 략)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
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또
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
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관”을 말한다. 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총괄부서 지정) -----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 -----.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생략)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 -----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1조(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현행	개정안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기획관·재무국장· <u>감사관</u> 및 3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u>감사위원장</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생략)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에게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에게 월 5만원을 한 도로 다음 각호의 요금을 지원 한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시 <u>리버버스</u> 이용요금	5. ---- <u>한강버스</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3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수립한다.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제6조제1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4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5조(재난계정자금의 대출절차)	제5조(재난계정자금의 대출절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 따라 재난계정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 는 자는 시장에게 대출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사목-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5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2조(기능)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상의 검토항목	4.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6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2. (생략) ② (생략)	제3조(지원내용) ① -- 제5조제13호----- ----- -----. 1.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7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의 범위) ①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 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 제15조에서 정한 “국가기 간 · 전략산업직종”에 따른 업 종을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한 다. ② (생 략)		제2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의 범위) ① ----- -----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 제1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8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7조(심사의 요청) ①·② (생략)	제7조(심사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3제1항-----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9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3조(원인자부담금) ①·② (생략)	제33조(원인자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u>환경부</u>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0조(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현행	개정안
제8조 (운영) 특수구조단장은 특수구조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속 소방항공대 및 수난구조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6. ----- -----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국가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괄부서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	3.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7조(휴일) ① 공무원의 유급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생략)	제17조(휴일)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3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3조 관련)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1시간 (시설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 서만 부과할 수 있음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 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운동장(421㎡)			5,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운동장(421㎡)
		10,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운동장(3,456㎡)			1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운동장(3,456㎡)
강의실 (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공동(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의실 (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공동(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당	1시간	50,000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250명),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300명),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300명)	강당	1시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25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30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300명)
	1시간	100,000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800명)		1시간	10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주민등록 현황, 취업확인 등의
자료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일 월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

[별지 제2호서식]

기숙사 이용 신청 및 서약서	처리기간
	3일
상기 본인은 기숙사생으로서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교육훈련에 매진함은 물론, 제반 준칙을 성실히 따를 것과 교육훈련생 상호간의 예절을 지키고, 교육훈련생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응 시 원 서

주민등록 현황, 취업확인 등의
자료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의 교육훈련생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일 월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별지 제2호서식]

기숙사 이용 신청 및 서약서	처리기간
	3일
상기 본인은 기숙사생으로서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교육훈련에 매진함은 물론, 제반 준칙을 성실히 따를 것과 교육훈련생 상호간의 예절을 지키고, 교육훈련생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